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888
----------	-------

발의연월일 : 2025. 12. 4.

발 의 자 : 양부남 · 박균택 · 김문수
이광희 · 이상식 · 양문석
김준혁 · 최혁진 · 박수현
채현일 · 전진숙 · 김태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과 보상을 함으로써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에 민주화운동으로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도 포함하고 있음.

당시 대학생들이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고 이에 상이 등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것임. 하지만 학사징계의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대학생 신분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지위를 상실한 자는 학사징계자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에 민주화 운동으로 학군사관후보생(ROTC) 지위를 상실한 자를 추가하여 관련자의 지위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법률 제 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받은”을 “받거나 학군사관후보생 지위를 상실한”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민주화 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 ----- ----- -----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 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u>받은</u> 사람	라. ----- ----- ----- <u>받거나 학군</u> <u>사관후보생 지위를 상실한</u> -----